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1997. 10.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①항에 의거 농업생명과학대학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및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적관리 서식의 기재항목에 관한 사항
2. 업적인정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업적평가의 기준 설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4. 계열별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업적 우수교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6.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학문계열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학문계열의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학장이 정한다.

제6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부칙(제7호, 1997.10.22.)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당시 이미 임명된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